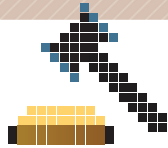


이미지 무단 사용 카드뉴스,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조정성립



A 인터넷신문은 군경합동검문소에서 한 의경대원이 모 경위가 쓴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을 이미지와 텍스트로 구성된 카드를 넘겨보는 형식의 기사로 전하면서, 경찰관인 신청인이 출혈이 심한 시민을 구할 때 입었던 피가 묻은 제복 사진을 총기사고로 숨진 의경의 제복 이미지인 것처럼 잘못 게재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신청인의 이미지를 불미스러운 사건을 보도하는 데 무단으로 사용해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됐으며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재부는 카드뉴스 형식의 조정대상기사가 최근 SNS에서 쉽게 매개되고 있어 신청인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하지만, 피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문제가 된 이미지를 교체하고, 신청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유감의 뜻을 전하는 내용을 담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것과 함께 상징적인 수준의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합의하도록 양 당사자에게 권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해 조정이 성립됐다.

모 경찰서장의 막말 논란에 대한 직권조정결정 수용

C 언론사는 모 경찰서장이 공개 간담회 자리에서 특정 단체를 지목해서 “뺏아버리겠다”는 등의 막말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해당 서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와중에 정작 해명을 해야 할 특정 단체에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인 해당 경찰서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며, 단지 경찰과 협력관계에 있는 단체들이 외부의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당부 내지 주의의 말 정도만 했는데 이를 들은 모 단체 회원들이 발언을 왜곡해서 언론에 제보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대로 보도를 할 경우, 원 보도시점으로부터 한 달이 넘게 지나 오히려 막말논란이 다시금 부각되거나 주의가 환기될 수 있다는 점, 인터넷 기반 언론사라는 점, 신청인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해당 언론사에서 보도를 인터넷과 포털(뉴스섹션은 즉시, 다른 웹문서 등은 연말까지 신청인 검색 후 피신청인 통보)에서 모두 삭제하고, 연말까지 A경찰서에 대한 PR보도를 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해 결정이 확정됐다.

다소 과장된 제목을 사용한 방송, 반론보도로 조정성립

B 방송은 모 국회의원실로부터 신청인 공사와 합작투자 관계에 있는 해외 현지회사의 감사보고서를 전달받아 “○○○○ 주재원들, 골프·유흥비 25억...”라는 제목을 사용하여 주재원들이 회사운영비로 골프를 치고 고급 유흥주점을 자주 이용했다고 방송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문제가 된 25억 원은 현지법인의 현지고용 인건비 등이고, 100여 만 원 정도의 유흥주점 이용 사실은 있으나 회사비용으로 골프를 친 사실은 없고, 현지 주재원은 1명으로 혼자 골프와 유흥비로 25억원을 썼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보도의 균형 측면에서 신청인의 반론이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제목이 사실과 다르게 다소 과장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청인의 입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방송하는 것으로 합의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양 당사자가 중재부의 권유를 수용하면서 조정이 성립됐다.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없는 초상 공개, 손해배상 책임 인정

D 방송은 외국인들의 한국 적응기에 관해 보도하면서 이들의 숙소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의 초상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촬영 당시 조그만 카메라로 본인을 찍고 있다는 것은 알았으나 방송에 나갈 것으로 인지하지 못했고, 방송사의 사전예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위에 알리지 않고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해당 보도로 인해 지인들에게 근무 사실이 드러나 곤란을 겪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신청인은 경비원과 만나는 최초의 상황을 촬영한 후, 제작진이 촬영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설명을 했고, 후속 촬영이 1~2분 간 계속되었는데 신청인이 촬영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판단해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신청인으로부터 촬영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초상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고, 신청인이 공개하고 싶지 않았던 직업이 공개됨으로써 사생활 침해 또한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3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양 당사자가 동의해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